

# 교원인사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가 설치·경영하는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의 교원의 인사관리·인사조직의 기능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,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구분)** ① 본교의 교원은 전임교원(정년계열, 비정년계열)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, 외국인 교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 정년계열 또는 비정년계열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8.11.5.><개정 2019.1.23.>

③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전임교수, 강의전담교수, 연구중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강사로 구분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④ 비전임교원은 특수신분교원으로 외국인전임교수, 명예교수, 석좌교수, 객원교수, 겸임교수, 연구교수, 외래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 등을 말한다.<신설 2019.1.23.>

⑤ 교원 중 정년계열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에 대해서는 처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19.1.23.>

**제4조(소속)** 교원은 우리대학교의 각 학과(부) 및 각 대학원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(겸직)** 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.<개정 2019.1.23.>

②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와 타 기관에 전임직이 아닌직에 위촉을 수락하는 경우 또는 진학,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초 1개월 전에 소속 학부(과)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
③ <삭제 2021.2.8.>

**제6조(복무)**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다.

**제7조(인사기록과 통계)** ①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교학지원처에서 작성 보관하게 한다.

② 총장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.

**제8조(정년)**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,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.

**제9조(명예·희망퇴직)** 재직 중인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·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.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8.27.>

**제10조(교원인사위원회)**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1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)** 교원의 재임용, 승진 등을 위한 업적의 심사와 연도별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며,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2장 신규임용

**제12조(총원계획)** ① 교원의 총원계획은 교수의 정·현원과 중·단기 학사운영계획을 기초로 강의담당 시간수와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,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단, 조교는 따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의거 신규채용분야, 채용과목 및 채용인원은 소속 학부(전공) 교수들의 협의를 거쳐 교학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의 합의 후,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단, 교무위원

회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09.25.><개정 2019.1.23.>

③ 총장은 결정된 신규채용분야, 채용인원, 채용직급, 연봉총액 등을 첨부한 총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<신설 2019.1.23.>

**제13조(임용원칙)** ① 신규 임용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의거 계약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학의 교육목적과 직결되거나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③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규교원 임용세칙 및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, (비정년계열 전임교원) 인사규정에 의한다.

④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채용된 교원이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⑤ 제5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,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.

**제14조(임용시기)** 교원의 신규임용은 수업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학기 개시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임용공고)** 교원의 신규임용은 접수마감일 15일 이상 채용분야, 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한다. 단, 특별채용의 경우 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**제16조(제출서류 및 전형방법)**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은 교원신규임용세칙에 의한다.

**제17조(임용절차)** ① 교원의 채용은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거 채용대상자를 선발하여 복수로 총장은 이사장에게 제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신원조회를 끝낸 후 임용한다. 단,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회가 끝날 때까지 조건부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. 단,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임용과 승진의 경우에 한하며, 재임용·전보·휴직·직위해제·복직 등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임용권)**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18조(임용기간)** 신규 임용 시 임용기간은 정관에 의한다.

**제19조(임용유예)** 임용권자는 교원 신규임용예정자가 다른 교육·연구기관 등에서 고용 계약기간 중에 있거나 연구의 계속,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.

**제20조(임용취소)**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.

**제21조(임용금지사유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
9.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

10.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가 설치·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1. 기타 교육법 제77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② 제①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22조(당연면직)**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1. 사망한 때
2. 정년에 달한 때
3.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
4.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
5. 기타 면직사항은 본교 교직원징계규정에 의한다.

**제23조(의원면직)**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### 제3장 재임용

**제24조(재임용시기)**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.

**제25조(재임용요건)** ① 재임용 요건은 교원업적평가규정결과에 의해 60%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.13>

② 재임용 교원업적평가는 임용기간 만료일의 직전학기까지의 평가결과로 한다.

③ 제1항을 미충족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임용 평가를 재심한다.

④ 1항에도 불구하고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인사규정 제3조의 2에 의한다.<신설 2021.4.16>

**제26조(재임용절차)** ① 재임용대상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)한다.

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에 제청하며, 이사장은 고과평가를 실시하여 임용한다.<개정 2021.8.27>

**제27조(이의신청 및 재심사)** ①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친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.<개정 2021.8.27>

② 제26조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교원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**제28조(제출서류)**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|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
| 1. 연구업적 목록  | 1부   |
| 2. 연구업적물    | 각 3부 |
| 3. 추천서      | 1부   |
| 4. 교수업적평가조서 | 1부   |

② 전항과 관련된 증빙서류(자료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승진임용

**제29조(승진시기)** ① 교원의 승진은 매년 10월 1일자로 행하고, 당해 년도 8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승진연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19.10.30.>

② 연구업적이 현저하고, 국가 및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로자에게는 임용기간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.

1.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2. 징계의 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중에 있는 경우
3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
정직 : 18개월    감봉 : 12개월    견책 : 6개월

**제29조의2(교수의 정수)** 부교수의 교수 승진은 교수의 정수가 전체 전임 교원의 100분의 30이내의 수로 한다. 다만, 본교 및 학부(전공)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원의 경우 교수의 정수 외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.<신설 2019.1.23.>

**제30조(승진소요연한)** ① 본교의 정년계열전임교원에 대한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. 단, 2013년 3월 1일 이전 임용된 전임강사는 조교수 임용으로 본다.<개정 2013.12.4.>

1. 조교수에서 부교수 : 6년<개정 2013.12.4.>
2. 부교수에서 교수 : 6년<개정 2013.12.4.>

② 2002년 1월 이후 임용교원의 승진소요연한은 제1항을 준용한다. 단, 계약(근무)누적이 6년 이하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.<2004.8>

**제31조(승진의 요건)** ① 총장은 승진대상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 70%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심의 후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제청을 하여야한다.<개정 2015.1.13.>

② 승진 교원업적평가는 승진신청일 직전학기까지의 평가결과로 한다.

③ 제30조 기간에는 휴직, 직위해제, 징계처분 기간,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32조(승진임용절차)** 승진임용을 위한 업적의 심사절차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장의 절차에 따른다.

**제33조(제출서류)** 승진임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이 제출할 서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.

**제34조(승진소요연수 산정)** 최초의 승진 소요연수는 본교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.

### 제5장 전부(과)·파견

**제35조(전부(과))** ① 교원의 전부(과)는 교원의 자격과 능력,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
② 전부(과)를 행할 때에는 해당교원, 해당학과장, 교학지원처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하거나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할 수 있다.

③ 교원의 전부(과)는 학기시작 30일 이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6조(파견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학부(과)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1. 다른 학부(과)의 요청이 정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
2.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부(과)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
3.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### 제6장 휴직 및 복직

**제37조(신분보장)** 본교 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등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,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
**제38조(당연퇴직)** 재직 중인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1. 제21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.
2.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
3. 정년에 달했을 때
4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

**제39조(휴직의 사유)**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<개정 2021.8.27.>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.)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<개정 2019.1.23.>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8.27.>
6. 국제기구·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.)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<개정 2021.8.27.>
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<신설2012.12.21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- 7의 2.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(제7호)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하는 경우<개정 2021.2.8.>
8.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<신설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<개정 2021.8.27.>
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<신설 2021.8.27.>
10.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<신설 2021.8.27.>
11. 그 밖에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신설 2021.8.27.>

**제40조(휴직기간)**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8.27.>

1.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2.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3.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.<신설 2019.1.23.>
4.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신설 2019.1.23.>
5.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19.1.23.>
6.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제39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<신설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7.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신설 2019.1.23.>
8. 제3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2021.8.27.>

9. 제3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, 해외 유학·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2021.8.27.>

② 휴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기 개시일 60일 전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2.8.>

**제41조(휴직자의 신분 및 복직)** ① 휴직중인 교원은 휴직기간 중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60일전에 복직원을 작성하여, 임용권자에게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2.8.>

③ 제39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을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복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④ 제39조 제1호,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중인 교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60일전에 복직을 신청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<개정 2021.2.8.>

**제42조(휴직교원의 처우)**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② 제39조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의2, 제8호,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
③ 제39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2.8.>

**제43조(휴직자의 해직)**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.

## 제7장 포상 및 징계

**제44조(포상)** 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많은 교원에게 총장은 포상할 수 있다.

② 교직원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·직원 포상규정을 따른다.

**제45조(징계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.

1. 법령, 정관 및 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2.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
3.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징계규정에 의한다.

**제46조(징계의 종류)** 징계는 견책, 감봉, 정직, 해임, 파면으로 구분한다.

부 칙(제정 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교직원인사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1. 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교원인사규정 중 휴직의 사유, 기간, 처우는 정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2019.02.08.

부 칙(2019. 10. 3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9조(승진시기) 중 2019년 이전 임용된자에 한해서 승진은 매년 4월 1일, 10월 1일자로 행한다.

부 칙(2021. 2. 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4. 1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8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